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법 제17조(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의 시행일('26.1.1.)이 도래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법 제17조에서 위임하거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1)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규정
- 2) 기금의 회계기관·계정의 설치,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현물자산의 운용수익금
2.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3. 차입금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금원

②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용자의 금리, 보증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및 계정의 설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우주항공진흥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우주항공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2.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6.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의 범위 및 선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기금의 투자·융자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 위탁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기관은 위탁받은 기금의 운영·관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그 밖의 기금 관리·운용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